

	<h2 style="margin: 0;">직원 임용 규칙</h2>		규정번호	6-3-4
			제정일자	2007.02.14
			개정일자	2012.04.30
			개정번호	Ver.3 총페이지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수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고용방법, 급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직원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사무원 이라함은 산학협력단 업무수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사무원을 말한다.
2. 전문계약직 연구원이라 함은 산학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단에서 임시적으로 고용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3. 강사라 함은 산학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단에서 교육운영에 필요해서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강사를 말한다.
4. 임시 계약직 사무원이라 함은 각 사업단에서 사업을 위하여 임시로 고용하는 사무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 ① 일반직 사무원은 해당업무분야의 업무처리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해당 관련기관 경력자로 한다.

③ 강사는 해당 학과 학사학위 이상 또는 현장실무경험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④ 임시 계약직사무직원은 해당업무분야의 업무처리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제4조(신규고용) ① 산학협력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직 사무원을 단장이 고용할 수 있다.

② 각 사업단의 연구원, 강사 및 임시 계약직 사무원을 신규 고용할 때에는 업무수행능력 및 기타 적격성을 사업단장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단장의 재가를 얻어 고용한다.

제5조(연봉 및 급여) ① 연구원의 급여는 업무수행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② 일반직직원의 급여는 업무수행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③ 강사의 급여는 업무수행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 또는 시간급으로 책정할 수 있다.

④ 직원의 급여는 연봉 총액의 12분의1로 나눈 금액을 매월 17일에 지급 하되 잔액 발생 시 최종 월에 일괄 지급하고,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무단결근 일에 대하여는 해당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⑤ 근로계약에 의하여 고용한 일반직 사무원의 급여는 산학협력단 예산에서 지급한다.

⑥ 연구원, 강사 및 임시 계약직 사무보조원의 급여는 당해 사업단 예산으로 지급한다.

제6조(계약기간) 직원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사업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사업은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고용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시 자동 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신분보장) 직원은 계약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의 해임하지 않는다.

제8조(해임) 직원은 사업 종료 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임 한다.

1. 각 사업단에서 채용하는 연구원, 강사 및 임시 계약직 사무원은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과 관한 사업 종료 시 자동 해임 된다.
2. 각 사업단에서 채용하는 연구원, 강사 및 임시 계약직 사무원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법정부담금)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의 법정부담금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0조(퇴직금) 1년 이상 고용 후 퇴직하는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산 지급 한다.

1. 일반직 사무직원의 퇴직금은 매년 퇴직적립금을 조성하여 퇴직 시 지급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 중간정산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 또는 감봉조치 할 수 있다.

1.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때
3.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제12조(비밀의유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은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고지의무) 산학협력단장은 계약 체결 시 직원에게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규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 규정에 따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이 규칙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